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변경 허가) 통지서
[]불허가
[]취소

관리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상속개시 (증여)일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연부연납 허가일	

허 가 사 항

납 부 연 월 일	① 연 부 연 납 세 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 부 할 금 액
1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 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 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① 연부연납 세액과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합 계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결정
•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